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
----------	-----

2023. 4. 28.(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3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2023년 4월 20일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홍만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 「도서관법」 전부개정(2021. 12. 7. 개정, 2022. 12. 8. 시행),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2022. 4. 8.),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 6. 13. 개정, 2020. 4. 7. 개정) 및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2. 12. 30.)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 직위 등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교육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3건)
 - 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 ⇒ 「지방자치법」 개정 반영(안 제2조제2호다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나)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도서관법」 개정 반영(안 제1조)
 - 「도서관법」 제30조 → 「도서관법」 제34조
 -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영(안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1건)
 - 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반영(안 제4조제2항제3호)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1건)
 - 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안 제3조제2항제1호)
 - 정책기획관 → 과학인재국장

- 제명 띄어쓰기 정비(2건)
 - 가)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 ⇒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이번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 위원 직위 등 변경 사항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외 2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는 다른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 훈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를,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외 1건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조례별로 각각 개정하기 보다는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를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
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을 “과학
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
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나. (생 략) 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p> <p>3. (생 략)</p>	<p>제2조(기능)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 -----</p> <p>3. (현행과 같음)</p>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u>----- ----- ----- -----.</p>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u> ----- ----- ----- -----.

4.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현행과 같음)

5.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u>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u>으로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 <u>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6.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u>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u></p>	<p><u>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7.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현행	개정안
<u>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u>	<u>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9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4881호, 2023. 2.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훈령 제1510호, 2023. 2. 24., 일부개정]

별표7 사무분장표

[과학인재국]

부서명	분장사무
청년인재육성과	34.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지원